

공고 제 42 호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10일

기흥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한 *은	한 *은 1986-10-09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15번길 (공세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9-17